일본의 부락차별문제와 인권*

최 종 길**

I. 서론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인권문제는 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등 기존에 한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등장하게 된 측면이 강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적인 한국인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하층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비판론으로 인권문제가 등장하기도한다. 한국사회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러한 상황은 80년대와는 사뭇 다르다. 즉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논리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도 불과 20-30년 사이에 인권과 관련된 인식과 그 배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권이란 용어에는 동서고금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인권이 강조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용어에는 사회적인 특수성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상사에는 당위(sollen)의 논의와 현실(sein)의 논리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위와 현실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인류보편적인 당위성만으로 인권을 파악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당면한 현실만을 고려한 인권을 논할 수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인권을 논할 때 그 구체적인 사안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그 사안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요소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인권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권을 역사적 생성물로 보고 그 인권을 적용해야하는 상황 역시 동일한 역사적 사회적 생성물로

^{*} 투고일자 : 2014. 11. 28 심사일자 : 2014. 12. 15 게재확정일자 : 2014. 12.19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HK 연구교수· 학술학박사

본다는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특정한 학문분야나 구체적인 사회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인권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떠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러한 서두를 논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일본에서는 지금도 심각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음성적으로 부락민1)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부락차별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후의 동화(同化)사업을 통해 부락차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 목적의식적인 국가정책을 통해 부락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생략되어 있다. 즉 부락차별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천황제 특히 메이지유신 이후 성립된 국가지배 시스템으로서의 근대천황제가 가지는 차별구조이다.

일본에서 70년대 후반 이후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기 시작한다. 물론 일본에서 이러한 경향이 대두하게된 배경에는 79년 영국의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의 레이건정부가 여기에 호응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은 현재적 시각일 뿐이다. 당시 일본의 부락해방운동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와 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혹은 대중적인 논의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이 시기 일본 내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이 멈추면서 나타난 불황이란 현실 속에서 이후 부락차별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새로운 운동방향으로서의 '인권'이다. 즉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별철폐란 인권용호의 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강조 혹은 '인권운동'으로의 외연 확대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야마토인'(大和人)'이면서도 동일한 '야마토인'에게 차별받는 '부락민'과 일본사회 내의 소수자 즉 동일한 '야마토인'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던 재일조선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대를 강조하여 운동전선의 확대와 대중적 기반의 심화를 꾀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모색에 대하여 가부의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출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의 '인권'론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에 부락차별문제의 고유한 성격 즉 천황제

¹⁾ 현재 일본에서 주로 중세 이래의 다양한 천민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 이 용어에는 '일반민'과는 다른 '부락민'이라는 상당히 차별적인 어감이 포함되어 있다. 부락이라는 일본어에는 차별적인 의미가 없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란 의미의 '부락'과 역사적으로 천민으로 분류되던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란 차별성이 강한 의미의 '부락'이란 두 가지 어법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부락은 후자의 의미이다. 유사한 용어로 '피차별부락민'이란 용어도 있다.

의 차별구조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동 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즉 천황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논의는 축소되어버리고 역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론으로 부락차별문제를 논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근대 천황제 국가의 형성과 부락차별문제

1) 케가레 의식과 천황제

중국적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사회가 그러하듯 일본의 고대 사회 혹은 국가도 양민과 천민을 기본으로 하는 신분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 일본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천민이 존재했었는지는 이 글의 요지가 아님만큼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다. 단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점은 일본에서는 고대시대에 신분제로써의 양천제가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양천제를 기본으로 한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양민과 천민의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지배자들은 이러한 신분질서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법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신분의 제약을 넘은 결혼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펴져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789년에 양천의 결혼을 금한 법규가 크게 변경되어 노비와 양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양민으로 인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노비신분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901년에서 923년 사이에 노비라는 신분은 폐지되었다. 물론 노비와 동일하게 매매되고 인권을 빼앗겼던 신분은 이후에도 지속되지만, 적어도 국가제도로써의 노비는 없어졌다.2)

그렇다고 해서 중세로 이행한 일본의 역사에서 천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의 일본 부락사 연구 수준에서 통설로 논의되는 내용을 정리한다면, 중세 피차별민③의 계 보는 고대 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세에는 고대나 근세 와 같이 법규로 명문화한 피차별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중세에는 법규로 규정된 제도에 근거한 피차별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세시대에 존재

²⁾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최종길 옮김. 『일본 부락의 역사』, 어문학사, 2010, p.30.

³⁾ 역사적 용어로서 '천민'과 '피차별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특히 율령에서 정한 양천제 혹은 일본의 근세 신분제도 속에서 천민이라고 규정된 사람과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사회적으로 차별 혹은 구별되던 중세 피차별민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천민'과 '피차별민'을 고대천민과 중세천민을 구별하는 정도의 용어로 사용한다.

한 피차별민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혼란기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사람들이 촌락 공동체에서 벗어나 구걸과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니던 부랑 민과 빈궁민이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가가 시설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동일한 곳에 집단 거주시키고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기피되고 천시되던 일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신분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기피되던 일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가. 고대 해이안 시대에 불교신앙이 퍼지면서 죽음과 관련된 케가레(穢れ) 관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불교적 사유관념과 결합되기 이전의 케가레 의식은 청정하지 않고 불결하며 사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신도적 종교 관념이었다. 여기에 불교적 사유가 결합되면서 케가레란 일상이 고갈되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 인간에게 미치는 일체의 악이며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인간의 죽음은 심각한 케가레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며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케가레를 가진 사람과동일한 공간에 있거나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케가레는 전염된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케가레는 끊임없이 전염되고 확대되는 것이었다. 즉 사람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과 동반된 케가레는 항상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따라서 이 케가레를 정화(清め)하는 행위가 필요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이것을 담당해야만 했다. 케가레가 정화되었을 때 인간들은 일상과 연결되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천시하는 케가레를 정화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이 사회적으로 필요했다. 이러한역할을 부랑민과 빈궁민이 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일을 담당하는 피차별민이등장하게 되었다.4)

이러한 케가레와 정화 사상의 정점에 천황이 있었다.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내려온 천황은 항상 청정하고 숭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케가레에 전념되어서는 안 되었다. 특히 9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편찬된 엔기식(延喜式, 헤이안 시대 중기에 편찬된 율령의 시행세칙)에는 천황과 도성을 케가레에서 지킨다는 관념이 강화되었으며 케가레에 접촉한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율이 매우 세밀하게 정해졌다.5)

이처럼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던 시기에 제도로서의 천민이 사라지고 고대 천민과는 직접적인 계보를 갖지 않는 중세 피차별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인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기피하는 케가레를 정화할 수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천황을 지키기 위한 정화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⁴⁾ 앞의 책, 『일본 부락의 역사』, p.31.

⁵⁾ 같은 책,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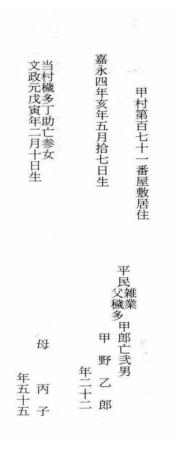
피차별민이 천황과 병렬적인 형태로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오염되거나 부정을 타서는 안 되는 너무도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천황과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되고 기피되는 천한 존재로서의 피차별민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근대 천황제 차별구조의 원형을 이룬다.

2) 근대 천황제 국가 시스템 속의 부락차별 문제6)

메이지유신 이후 1872년에 임신호적(壬申戸籍)이 만들어졌다. 임신호적은 1871년 4월에 제정된 근대적 호적제도에 기초하여 에도시대 호적부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종문 개장(宗門改帳)을 폐지하고 만든 것이다. 에도시대의 종문개장은 누가 어느 마을의 사

람인가를 표기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임신호적은 가장인 호주를 필두로 하여 한 가정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을 호주와의 관계 즉 누가 어떤 친족관계에 있는지를 반드 시 표기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호주의 혈통 (続き柄)은 그대로 그 집안의 연속성을 표시하는 것이 되었 다. 즉 집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의사(擬似)혈연적 기재가 임신호적에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메이지유신 이후에 집안에 대한 혈연의식은 봉건시대에 비하여 더욱 강화되었 다. 따라서 호적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파악함과 동시 에 누가 어느 집안의 계열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기록하는 형태로 인민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혈연에 기초한 호적제도는 1871년 8 월에 '에타 히닝8)이란 명칭을 폐지하고 신분과 직업 모두 평민과 동일하게 한다'는 천민폐지령(일명 해방령)이 공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락민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과 소외를 잔존시키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임신호적에 기재된 피차별부락민의 호적을 보자. 옆에 보이는 예9)는 『법조회 잡지(法曹会雜誌)』에 실린 것



⁶⁾ 이 절의 내용은 필자의 「『모노노케히메』를 통해 본 일본의 천민과 천황제」(『일어일문학』제50집, 2011년 5월)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⁷⁾ 上杉聰, 『天皇制と部落差別』(三一書房, 1990), 145-146쪽.

⁸⁾ 전통시대에 천민을 지칭하던 용어.

⁹⁾ 같은 책, 156-157쪽에서 재인용.

으로 고치현(高知県)의 나가오카(長岡)마을 촌장이 1924년에 법무성에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분이다. 촌장은 호적의 등·초본을 발행할 경우 '아버지 에타(父 穢多)'라는 항목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발행하면 해방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지우고 발행하면 원본과는 다른 등·초본을 발행하게 되어 역시 문제가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무성에 묻고 있다.

임신호적에는 호주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 오른쪽 위에 본인의 혈통을, 호주 이외의사람은 이름 위에 그 사람의 혈통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예에도 혈통이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 호적의 주인인 코노 오츠로(甲野乙郎)본인이 천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코노의 아버지는 잡업에 종사하던에다였던(雜業 父 穢多) 천민임을 기록하고 있다. 단, 아버지 코로(甲郎)는 천민폐지령에 의해 새롭게 평민이 되었으므로 이름 위에 평민이라고 적고 있다. 동일하게 코노오츠로의 어머니 헤코(丙子)역시 이 마을에 살던 에타 쵸스케(丁助)의 딸임을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호적에는 코노 오츠로가 에타인 아버지 코로와 어머니 헤코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즉 집안의 혈통이 기록되어 있다. 이 호적에 기초하여 코노 오츠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호적을 추적하면 코노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혈통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처럼 임신호적은 계속해서 조상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본인의 시조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혈연구조로 작성되어 있다. 임신호적에서 신설된 혈통을 적는 난은 에도시대의 호적인 종문개장에는 없던 항목으로 메이지정부가 이것을 신설한 "목적은 민중을 가계(家系)별로 파악"10)하여 이들을 이에제도속에 묶어두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적제도는 누군가가 호적을 통해 자신의 조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추적해간다면, 몇 대조의 아무개 때 유력한 장군가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 윗대에는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와 이어진다는 혈연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국가 지배기능과 결합하여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자손이자 최초의 천황인 진무(神武)천황 이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만세일계로 이어오고 있는 천황가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천황과의 거리관계에 의해 귀천(貴賤)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성스러운 것'으로의 천황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천황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천한 것'으로의 천민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는 천황제가특히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 권위와 차별의 정점으로 기능하게 했다.11) 이처럼 천

¹⁰⁾ 같은 책, 163쪽.

¹¹⁾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진우 편저, 『21세기 천황제와 일본』(논형, 2006) 가운데 우에노 치즈 코와의 대담을 참고할 것.

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관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성스러운 것'과 반대된다고 인식되는 '천한 것'을 배제하는 기제(機制)로 작용하고 있다.

애니미즘을 기초로 한 일본인의 전통 종교로써의 신도는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신도로 정착되면서 천황을 일본 열도에 존재하는 모든 신과 인간의 최상위에 위치시킨다. 즉, 천황 혹은 황실과의 거리관계에 의해 일본 열도에 존재하는 모든 신과 인간의 상하관계를 결정하여 '신의 나라 일본'을 신의 자손인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로만들었다. 이하에서는 국가신도 창출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성(천황)-천(천민)이란서열의식의 단면을 살펴보자.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도국교화 정책은 서양 열강과의 조약개정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한 때 좌절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880년대에 들어와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일명 '신도 비종교론'을 강조하면서 신도국교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무진(戊辰)전쟁 이후 천황을 위해 죽은 전몰자를 추모하기 위해 1869년에 창건된 토쿄초혼사(東京招魂社)는 1879년에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로 명칭을 바꾸고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라는 특별한 사격을 부여받아 국가신도의 중심에 위치하였다.12) 이로써 신도는 다른 모든 종교와는 격을 달리하는 국가종교가 되어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지배체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정책에 의해 성립된 국가신도는 신도적인 실천 즉, 일본의 시조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로부터 만세일계의 혈통을 이어온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것, 국가의 중심에 존재하는 천황과국민 사이에는 전통적인 강한 유대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국민통합을 위한 근간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도덕적인 면에서 천황은 모든 일본인의 어버이이며 국민은 천황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황에 대한 충성은 인류의 근본이라고 설파된다.

국가신도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신불분리(神佛分離) 정책과 사격제도(社格制度)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격제도는 메이지유신 이후 모든 신사에 대한 등급을 정한 제도로 1871년 7월에 공포된 태정관(太政官) 포고 「관사 이하 정액 신관직제 등 규칙(官社以下定額神官職制等規則)」에 의거한다. 이 포고에 의하면 신사는 관사(官社)와 제사(諸社)로 분류된다. 관사란 기년제(祈年祭)와 신상제(新嘗祭) 때 국가로부터 봉폐(奉幣)를 받는 신사로 보다 세분하여 관폐사(官幣社)와 국폐사(国幣社)로 구분된다. 관폐사는 천황이나 황족을 제사지내는 신사로 특히 기년제와 신상제 때는 황실에서 봉폐를받는 등 조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외 신궁(神宮) 예를 들어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이나 이세신궁(伊勢神宮) 등은 신사와는 별도로 취급되어 사격이 없으며 모든 신사의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신도와 관련된 공식적인 신사의 서열

¹²⁾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書店, 2002)、7쪽、

은 신궁, 관폐사, 국폐사, 제사의 순이 되었다. 이러한 서열은 천황 또는 황실과의 거리 관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천황이 일본열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서열화의 법적인 완성은 1906년 12월에 공표된 「신사합사령(神社合祀令)」이다. 이 법령은 한 마을에 하나의 신사를 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내무성은 신사정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각 신사의 서열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국가신도 정책의 정신적 배경에는 현인신(現人神)이라는 천황의 신성성에 대한 신앙과 신의 국가 일본이라는 의식이 존재한다.13)

2. 1945년 일본국헌법의 재정과 부락차별문제

1) 신헌법의 제정과 인권

1945년 패전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을 기초로 하여 전전부터 존재하던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었다. 헌법 제정을 시작으로 한 전후의 민주적 개혁은 서구식 민주주의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획기적인 의의가 있었다. 즉 일본에서 전후란 부락차별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권침해를 헌법 11조(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써 현재 및 장래의국민에게 부여된다)에 의거하여 비판하고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시대라고 할수 있다.

1945년 11월에 GHQ는 여성해방, 노동조합의 장려, 교육의 민주화, 비밀경찰의 폐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조치를 일본정부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 GHQ 민정국은 이러한 작업의 입법적 조치로써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초안을 준비하였다. GHQ의 안 가운데 현재의 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락차별을 나타내는 '사회적 신분'과 '카스트'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GHQ 안의 13조에는 '모든 자연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카스트 또는 출신국에 의해 정치적 관계, 경제적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에 의한 차별을'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14) 이러한 내용이 신헌법초안에 삽입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1871년 8월에 천민폐지령이 발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대부터 존재하던 부락민에 대

¹³⁾ 같은 책, 6쪽.

¹⁴⁾ 권혁태· 차승기 역음, 『전후의 탄생』, p.189에서 재인용.

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던 전전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GHQ가 헌법초안을 기초하는 단계에서부터 신분과 혈통을 주된 근거로 하여 온 존되어 온 부락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사회적 신분'이란 문구는 그대로 두는 한편 '카스트 또는 출신국'이란 용어를 보다 추상적인 '문벌'이란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는 우선 국적 조항과 관련하여 재일조선인을 헌법의 기본적 인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이 조항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신분 또는 문지(門地)에 의해'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신헌법제정을 위한 국회 심의에서 문지란 귀족과 화족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에는 부락차별이 포함된다고 대답하였다. 그 결과 전후의 신헌법에서는 일본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평등하며 부락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헌법은 천황을 상징으로 남겨둠으로써 일본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민에 한정함으로써 신헌법제정의 의미는 상당히 축소되어버렸다.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하더라도 헌법에서 국민의 평등과 인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락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본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남아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락민은 전후의 새로운 사회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2) 동화대책심의회 활동의 빛과 그늘

이전부터 부락해방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아사다 젠노스케(朝田善之助)는 1951년 교 토에서 일어난 『올로망스』 사건¹⁵⁾ 이후 부락차별이란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 의식뿐만 아니라 부락민이 처한 열악한 실태야말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락민이 처한 열악 한 실태는 역사적으로 긴 연원을 가진 것이며 특히 전후에 행정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에 원인이 있다고 아사다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 초하여 부락민들은 차별적인 사건의 배경을 분석하고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조 치를 요구하는 차별행정규탄투쟁을 전개하였다.

¹⁵⁾ 패전 후에 출판된 성을 흥밋거리고 한 풍속잡지인 『올로망스』에 부락민에 관한 차별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소설이 게재되자 이를 규탄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사건.

이러한 투쟁의 결과 1952년 6월에 문부성은 동화교육에 관한 차관 통달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부락차별 철폐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고, '동포일화(同胞一和)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통달에 의하여 다음해 53년에 후생성은 전후 처음으로 동화예산을계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1957년 말에 개최된 해방동맹 제12회 대회는부락해방을 위한 국책수립을 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58년 도쿄에서 열린 국책수립요구 전국부락대표자회의에는 부락민 이외에 각종의시민단체와 정당이 참가하여 차별철폐와 행복추구를 전후 일본이 지향해야할 국가적과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1960년 8월에 동화대책심의회설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으로 동화대책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에서 안보투쟁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소득배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내각이 성립한 시점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동화대책심의회는 62년부터 63년에 걸쳐 전국 부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동화대책사업의 대상이 된 세대 수는 40만 7천 세대 이상이었다. 이들 가운데 16개 부락을 선택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적인 부락의 경우에는 인구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슬럼화 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고도성장에 따른 인구유입이 현저하나 차별과 생활난 때문에 귀향하는 자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해인 64년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열리고여기에 맞추어 신칸센이 개통된 시기였다. 이처럼 일본의 고도성장을 상징하는 올림픽·신칸센과 전근대적 차별을 상징하는 부락차별이 혼재하는 현실은 전후 일본사회의 모순구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부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에 기초하여 심의회는 1965년 8월에 부락문제 해결을 위한 답신을 제출하였다. 답신은 1) 일본에 부락문제는 존재한다. 2) 이것은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3) 이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책임이며 동시에 국민적 과제이다. 4)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교육과 취직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5) 악질적인 차별을 규제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답신에 의하여 헌법이 강조한 평등 이념과 차별이라는 현실과의 괴리, 이념적 당위로써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현실로써의 차별, 경제성장 속에서 악화되고 있던 부락의 열악한 환경 등 현실과의 차이를 매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락차별을 방치해온 행정=국가의 책임이 논의되었다. 답신은부락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 조치를 정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요구

하여 마침내 69년에 동화대책사업 특별조치법이 10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871년의 해발령 이후 처음으로 부락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전후에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부락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법률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 전국적인 부락문제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법적 기한이 반이나 지난 74년 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부락차별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스러운 존재와 이의 극점에 위치한 천한 존재로서의 부락민이란 차별적 사회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식 구조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부락차별문 제는 전후 일본 헌법이 남겨놓은 상징 천황제라는 국가구조의 문제와 일본 열도에서 살아온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와 문화의 문제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의미를 가진 부락해방운동은 차별철폐 혹은 인권과 관련하여 국 가의 역할을 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3. 인권이란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고도성장이 주춤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정개혁과 민영화 노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우경화를 가속시켰다. 즉 1978년 원호(元号)의 법제화, 1980년 관료의 야스쿠니 참배, 1982년 교과서 문제 등 우경화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사회는 천황을 국민동화의 핵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을 강화시켜간다. 동화행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8년에 동화대책사업 특별조치법을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는 결의를 하였지만 정부는 겨우 3년 연장으로 마무리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동 사업의 명칭에서 '동화'란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정령(政令)으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동화행정의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이 끝나면서 부락민들의 생활개선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 동화대책사업에만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다. 특히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락민들의 열악한 생활 실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또한 사회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젊은 층일수록 부락민과의 결혼이나 동일한 직장 내에서의 근무 등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락차별에 대한 이중적이고 중간적

인 태도는 여전히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위적인 대답으로 차별반대를 이야기하지만,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해 마땅하다는 형태의 반응이 여전히 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부락차별철폐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사회의 역사적 구조를 반영하는 부락차별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권문제와 연결시키고자하는 발상이 제기되었다. 부락차별철폐운동은 기본적으로 인권옹호의 과제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즉 부락문제의 해결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본사회 전반에 널리퍼져있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반대 나아가 일본인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통하여 부락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66년 유엔에서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일본사회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 규약은 직접적으로 일본의 부락차별문제를 인권문제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전후에 제정된 일본국헌법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을 주장한다. 즉 일본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은 국민에게 한정되지만 이 규약은 국적을 초월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움직임과 더불어 인권문제로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던 부락차별철폐운동은 1977년에 유엔의 바르크 슈라이버 인권부장을 초대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인권주간을 정하여 부락해방동맹과 세계인권선언연락회의가 인권운동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부락차별철폐운동의 경험은 국제인권규약 비준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1988년에 일본에서 반차별국제운동 단체의 결성으로 수렴되었다. 이후 이 단체는 1993년 유엔에 비정부조직으로 등록하고 독자적인 일본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부락차별철폐운동이 '인권'이라는 새로운 운동방향을 설정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적 시점에서 이러한 방향 전환이 무엇인가 새로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일본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 움직임에 대하여 부락민들이 재일조선인 차별 반대운동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증거는 매우 미약하다. 즉 부락차별철폐운동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한 '인권'문제는 부락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러한 방향전환이 부락민 이외의 일본인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 부락민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구체적인 증거도 미약하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락차별철폐운동은 답보상태이다. 이것은이러한 방향전환이 실질적으로 운동의 양적 팽창이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Ⅱ. 결론

일본에서 현재에도 '부락민'이라 불리며 차별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초기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구결과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니던 부랑민까지 이어진다. 이들 부랑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가가 시설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동일한 곳에 집단 거주시키고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기피되고 천시되던 일을 부과하였다. 여기에 신도적 성천(聖賤)의식과 불교적 살생관이 결합하면서 차별 관념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일본의 천황제적 지배 시스템 속에 이러한 관념이 포함되면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차별적 정치, 사회, 문화 구조가 재구축되었다.

1945년 일본은 패전과 더불어 전후 개혁을 실시하고 새로운 헌법을 재정하였다. 이 헌법은 전전의 헌법에 비하여 인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차별의 근원인 천황제를 남겨둠으로써 전후 일본사회에서 부락차별문제 해소에 걸림돌을 남겨놓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부락차별철폐운동은 차별철폐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7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권이란 새로운 운동지평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에 부락차별문제의 고유한 성격 즉 천황제의 차별구조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론'으로 부락차별문제를 논하는 만큼 천황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논의가 축소 되어버리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부락차별철폐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과 단체는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부락차별문제와 인권

최 종 길

일본에서는 지금도 부락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사회에 이러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근저에는 천황제 특히 메이지유신 이후 성립된 국가지배 시 스템으로서의 근대천황제 속에 내포된 차별구조 때문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부락민들은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한계를 노정시키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서 70년대 후반 이후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현실주 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부락차별철폐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은 불황이란 현실 속에서 이후 부락차별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새로운 운동방향으로서의 '인권'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방향전환이 발생시키는 문제 즉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론으로 부락차별문제를 논하게 되면 천황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논의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부락차별철폐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는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진우 편저,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2006.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최종길 옮김, 『일본 부락의 역사』, 어문학사, 2010.

최종길, 「『모노노케히메』를 통해 본 일본의 천민과 천황제」『일어일문학』제50집, 2011 년 5월.

권혁태·차승기 역음,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田中伸尚, 『靖国の戦後史』, 岩波書店, 2002.

上杉聰. 『天皇制と部落差別』. 三一書房. 1990.

小林茂,『部落差別の歴史的研究』,明石書店,1985.

山本登,『部落差別の社会学的研究』,明石書店,1984.

奥山峰夫、『部落差別撤廃論をめぐる批判的研究』、部落問題研究所、1998、

八木晃介、『部落差別論: 生き方の変革を求めて』、批評社、1992.

村越末男.『戦後部落差別事件史に学ぶ』. 明治図書出版. 1993.

杉之原寿一、『現代部落差別の研究』、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1983.

総理府、『同和対策の現況』、大蔵省印刷局、1974.

磯村英一、『同和問題と同和対策』、解放出版社、1982.

杉之原寿一、『同和対策事業史の研究』、兵庫部落問題研究所、1997.

部落問題研究所編,『同和教育』,三一書房,1960.

部落解放·人権研究所編,『部落問題·人権事典』,解放出版社,2001.

部落問題研究所編,『戦後部落問題年表』,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1979.

部落問題研究所編,『部落問題資料』, 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 1974.

部落問題研究所編、『部落の歴史と解放運動』、部落問題研究所、1954.

部落問題研究所編,『部落の歴史と解放運動』, 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 1997.

部落問題研究所編,『資料戦後同和行政史』, 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 1979.

部落問題研究所編,『資料戦後部落解放運動史』, 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 1979.

部落問題研究所編,『戦後部落の現状・行政の研究』, 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 1980.

領家穣、『日本近代化と部落問題』、明石書店、1996.2.

関西大学部落問題委員会編,『部落解放への視点』, 関西大学, 1974.

部落問題研究所編、『部落の生活史』、部落問題研究所、1988.

16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16호

部落問題研究所編,『部落史史料選集』, 部落問題研究所出版部, 1988. 渡辺久丸,『憲法と今日の部落問題』, 文理閣, 1987.3. 野口道彦,『部落問題のパラダイム転換』, 明石書店, 2000.4. 長谷川正安,『部落問題の解決と日本国憲法』, 部落問題研究所, 1995.4.